

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의안제출일 및 제출자 : 2002. 10. 11,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2. 10. 16
- 다. 의안번호 : 제 2002 - 34 호
- 라. 상정일자 : 제9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(2002. 10. 21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임영만)

가. 제안이유

- “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“이 “장사등에관한법률“로 개정됨에 따라 자구수정 및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
- 묘지의 사용기간을 법률이 정한 기간만큼 연장케하는등 동조례 내용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본문내용중 “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”를 “장사등에관한법률”로 자구수정(안 제1조)
- 묘지의 사용기간을 15년 단위로 하고, 연고자가 설치기간을 연장신청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매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함(안 제9조)
- 기존 공설일반묘지에 안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토록함
-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음

구분	사용료(15년간)		관리비(3년간)		비 고
	기 준	금액(원)	기 준	금액(원)	
공설공원묘지(매장)	1㎡당	18,000	1구당	36,000	
납골묘	1개안치단당	18,000	1개안치단당	10,000	
납골당	1개안치단당	60,000	1개안치단당	20,000	
공설일반묘지(매장)	1㎡당	2,000		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하춘영)

- 본 개정 조례안은 “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”이 “장사등에 관한 법률”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정비와 동 조례 내용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
- 일반묘 및 납골묘의 사용면적, 기 안치되어 묘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, 분묘의 설치기간, 납골 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,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 등을 개정 법률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요지 : 기재 생략

6. 수정안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본 개정 조례안은 “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”이 “장사등에 관한 법률”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일반묘 및 납골묘의 사용면적, 기 안치되어 묘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, 분묘의 설치기간, 납골 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,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 등의 내용을 개정된 법률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는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함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